

라오스(Laos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99년(기업 근로자), 2001년 시행; 2008(공공부문 근로자)
- 현행법 : 2013(사회보장), 2014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※ 장제비는 질병과 출산급여에 의해 지급됨.

3 적용대상

- 민간 및 국영 기업체 근로자, 공무원, 경찰 및 군인
- 임의적용 : 자영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기준소득의 2.5%; 공무원, 경찰 및 군인은 8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월 법적 최저임금임
 - 월 법적 최저임금 : 1,100,000kip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4,500,000 kip
- 자영자 : 월 기준소득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월 법적 최저임금임
 - 월 법적 최저임금 : 1,100,000kip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4,500,000kip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2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적인 월 최저임금임
 - 월 법적 최저임금 : 1,100,000kip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4,500,000 kip
- 정 부 : 공무원, 경찰 및 군인의 사용자에게 월 임금총액의 8.5%

5**급여종류별 수급요건**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이 최소 15년(공무원, 경찰 및 군인은 25년) 이상인 60세 남성 혹은 55세 여성, 유해·위험직종 근로자는 55세 남성 혹은 50세 여성
 - 노령보조금
 - 가입기간이 최소 15년(공무원, 경찰 및 군인은 25년) 이상인 60세 남성 혹은 55세 여성

- 장애급여
 - 장애연금
 - 최소 근로능력의 41%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, 최근 24개월 내 최소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 - 소득조사 : 가입자가 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금은 감소됨
 - 지속간병수당 : 최소 근로능력의 81%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,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함
 -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의학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을 평가함
 - 장애보조금
 - 근로능력을 41%미만으로 상실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, 최근 24개월 내 최소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 -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의학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을 평가함
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최소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 - 수급 가능한 유족
 - 55세 이상의 미망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하지 않는 미망인, 18세 이하의 고아(장애 아동은 제한 없음),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인 피부양부 또는 55세 이상인 피부양모
 - 미망인(홀아비) 연금은 재혼 또는 고용 시 중단됨
 - 유족보조금 : 사망자가 최소 3년의 가입기간을 있을 경우에 지급됨

6**급여종류별 지급액**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민간 영역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, 연금액은 <가입자의 총 연금점수 × 퇴직 전년도 모든 가입자의 예상 월 평균 가입소득 × 2%> 로 산정함
 - 매년 취득된 연금 점수는 가입자의 월 평균 가입소득을 그해 모든 가입자들의 월 평균 가입소득으로 나눈 값임. 연금점수는 다른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산정됨
 - 공무원, 경찰 및 군인에게는 근로자가 국가혁명운동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기간에 따라

최근 가입소득의 일정 비율 지급 : 1954년 이전부터 일한 근로자에게는 80~100%, 1955~1974년 사이에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에게는 75%~90%, 1975년 이후에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에게는 70~80%를 지급함

- 급여조정 :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소득 변동에 따라 최소 1년에 한번 조정
- 노령수당 : 최근 6개월 간 가입자 월 평균 가입소득의 1.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에 가입 연수 곱한 금액이 지급됨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

- 최근 6개월 간 가입자의 월평균가입소득의 90%에 평가된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곱한 금액이 지급됨
- 소득조사 : 가입자가 고용된 경우 완전 장애연금의 25%가 지급됨
- 지속간병수당 : 장애연금의 70%가 지급됨
- 급여조정 :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소득 변동에 따라 최소 1년에 한번 조정

- 장애 보조금 : 최근 가입자의 6개월 간 월평균가입소득의 10배에 평가된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곱한 금액이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의 최근 월가입소득의 3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혹은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이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됨
- 고아연금 : 사망자의 최근 월가입소득의 2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혹은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각 고아에게 지급됨.
 - 고아연금의 최대 합산금액은 사망자의 최근 월가입소득의 6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임
- 피부양부모 연금 : 사망자의 최근 월가입소득의 3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이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됨
- 피부양부모연금의 최대 합산금액은 사망자의 최근 월기준소득의 5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혹은 장애연금임
- 유족연금의 최대 합산금액은 사망자의 최근 월가입소득의 80%, 또는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임

• 유족 보조금

-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이 달라짐
- 3~12개월의 가입기간이 있는 사망자의 월평균가입소득의 5배부터 최소 44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사망자의 월평균가입소득의 30배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됨

- 노동사회복지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)
 - <https://www.molsw.gov.la/>
 - 제도 감독

- 국가사회보장기금 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<https://www.nssf.gov.la/>
 - 보험료 징수와 제도 관리운영

<2018년 ISSA 자료>